

국제화에 따른 한국에서의 로스쿨 도입논의

成 樂 賢*

I. 서론

법률시장 개방의 압력과 함께 사법제도의 전반에 걸친 개혁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법학교육제도, 사법시험제도, 판사·검사의 임용제도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법률시장 개방에 따르는 과제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문제는 법과대학이나 법조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다량 양성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국제 법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논의의 기본적 배경이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생하여 시행되어온 로스쿨제도가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 과연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소기의 목적에 부응하는 제도가 될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로스쿨의 인가 방법과 숫자, 선발인원 등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하기 전에 법률시장개방과 영미계 로스쿨의 현황에 대해 객관적인 조명을 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嶺南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II. 사법개혁논의의 진행상황

1995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한 세계화추진위원회, 대법원, 법무부의 공동연구로 법조인 선발인원의 확대, 시험과목 조정 등의 사법시험제도 개선과 사법연수원의 독립성 강화와 교과과정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연차적으로 법조인 선발인원수를 늘려나가 마침내 2001년부터 사법시험의 합격인원이 1,000명에 이르게 되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법조인 수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전제 아래 법조인 양성과 선발방식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5년 당시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고시낭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응시자격과 횟수의 제한에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 1998년 12월 사법시험령을 통해 제1차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삭제된 상태이다. 또한 법조인 양성과정에서의 중점을 사법시험 이전에 둘 것인가 혹은 그 이후의 이론 및 실무교육과정에 두어야 하는가, 법률전문교육과정의 주도적 역할을 대학과 국가 중 누가 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1998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산하의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에서 다양한 전공의 학부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수준에서 전문법률가 양성 및 심화된 학문연구를 위한 법학교육을 시행하는 법학대학원의 도입을 주장한 이후, 1999년의 대전법조비리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시민의 사회 참여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논의를 했으나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로스쿨 도입방안을 포기하고 사법연수원을 한국사법대학원으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후 2001년 3월의 사법시험법을 통해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일정한 등록금 납부 등의 형식요건만 갖추면 학습내용 없이 학점을 부여해 주는 편법적인 학사편입제도를 마련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이 지적된다. 현재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법조인선발과 양성제도에 관한 개혁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III.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

1. 법률시장개방의 진행상황

2001년 11월의 WTO 도하각료회의의 합의에 의하면 법률시장개방을 포함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협상 시한은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협상이 다소 지연되던 중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합의로 2005년 12월에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차 각료회의시까지 협상기한이 연장되고 협상의 기본골격이 합의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미국,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중국, 싱가폴, 파키스탄, 대만 등 11개국으로부터 '개방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제출한 개방요구의 내용, 회원국들의 개방 현황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업 등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와 대한변협 등 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작성하여 2003년 3월 WTO에 제출한 상태이다. 2003년 3월의 1차 양허안 제출 이후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EU, 호주, 캐나다, 싱가폴, 스위스 등 시장개방 요청국들과 양자협의를 13회 가졌고 WTO서비스 이사회 등 다자협상에 7회 참가했다. 외국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허용하고 외국 로펌의 국내 지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우리측 1차 양허안에 대하여, 상당수 개방 요청국들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내변호사와의 동업·고용 허용을 요구하는 미국, 호주, EU와는 향후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2. 1차 개방안의 내용

1차 개방안은 제한적 면허방식(Limited Licensing Approach)에 입각하여 외국법률가가 국내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자격취득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자문(consultancy)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L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여기에는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허용하고, 외국 로펌의 국내 지사(representative offices) 설립을 허용하나 외국 로펌의 국내변호사의 고용 및 동업을 금지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¹⁾

이에 따르면 외국로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 새롭게 외국로펌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국제통상에 관련한 고도의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국의 로펌이 국내에 분사무소의 설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국내의 기업이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예컨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은 취득했으나 미국 로펌에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가 국내에 유입되어 무분별하게 국내법관련 업무를 취급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²⁾

그 밖에 외국 변호사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취득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했을 것, 분사무소 대표의 경우에는 자격취득국에서 3년 포함 7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했을 것, 본국 법조계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을 것, 고객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의 1차 개방안은 외국변호사의 국내변호사와의 동업이나 고용을 금지하여 간접적으로도 국내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미국, 호주, EC 등은 국내법과 외국법의 총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북아에서의 법률시장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를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향후 이를 전면 허용할 것인지, 제한 허용한다면 제한의 형태와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협상논의가 따르게 될 것이다.

3. 국제법률서비스 교역의 현황분석

2004년도의 OECD보고서에³⁾ 따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100대 로펌에는 미국의 로펌 69개, 영국 17개, 호주 7개, 캐나다 5개로 이들 4개국의 로펌이 98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상위 20위에는 미국 11개, 영국 8개, 호주 1개) 소속 변호사수 기준의 세계 20대 로펌에도 미국의 로펌 10개, 영국 9개, 호주 1개로 일부 국가에 극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또한 미국 경제분석국이 제시하는 자료에 따른 미국의 2002년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31억 4,300만 달러(약 3조 700억원)이며

1)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주요정책, '법률시장개방대비'란 참조

2) 김형준, 법률시장 개방현황과 향후과제, 법조 2005-3(Vol. 582), 28면.

3)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2, TD/TC/WP(2003)40/FINAL, 32면 이하 참조

그 중 대일본 수출액이 5억 1,100만 달러, 대한국 수출액이 5,500만 달러에 이른다. 같은 해 영국의 법률서비스 수출액도 미국의 경우에 유사한 수준이다.

세계 법률서비스 교역의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수준의 로펌들은 대형화하고 있으며 영국 로펌이 국제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1997년 세계 10대 로펌의 평균 변호사수는 621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92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대형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영역의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을 기한 결과로 보여진다. 1997년에는 변호사수를 기준으로 한 세계 10대 로펌에 영국의 로펌은 3개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6개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다른 EU 국가의 로펌을 지속적으로 흡수합병해온 결과이다. 이렇듯 국제법률시장은 영미계 로펌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법률시장 미개방국의 시장을 노릴 것이다.

4. 우리나라 법률시장 현황

2001년도 우리나라의 법무관련 서비스업의 총매출액은 2조 488억이고 그 중 변호사업의 매출액은 9,672억원에 달한다. 변호사업의 사업체 수는 2,380개에 그 종사자 수는 14,891명⁴⁾ 매출액은 약 9672억 6천만원에 달했다. 10명 이하의 사업체가 1996년도의 93.8%에서 2001년도에는 90.9%로 낮아져 다소 대규모화 하는 경향을 알 수 있으나 아직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1996년에는 50명 이상의 로펌이 3개 뿐이었으나 2001년에는 16개로 늘었고 그 중 100명 이상의 로펌도 8개가 생겼다는 점은⁵⁾ 특기할만하다.

2002년 현재 한국의 법조인(판사, 검사 포함)은 8,238명으로서 법조인 1인당 국민 수는 5783명이다. 이는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509명 등과 큰 차이를 보인다. 2002년 당시 변호사 수는 5,073명으로서 변호사 1인당 국민수는 9,391명이었다. 이는 미국 284명, 영국 593명, 프랑스 1827명과 역시 큰 차이가 있다. 2005년 현재 전국의 변호사는 6817명으로 상당히 증가되었으나 외국의 수준에 근접하려면 아직도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 법조인의 숫자만 양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송무분야 이외의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수

4) 종사자는 변호사 및 부속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것.

5) 통계청, 2001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있도록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IV. 외국의 법률시장개방 그 이후

1. 독일의 법률시장개방

1998년 유럽연합이사회(EU Council)는 유럽공동체조약안에 규정된 법률사무소 설립의 권리와 국제적 법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지침’(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stablishment directive)을 통과시켜 이를 2000년 3월 14일까지 회원국의 국내법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도 ‘유럽변호사의 독일내 활동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제 11조 내지 제 15조를 통해 위의 설립지침이 국내법으로 구체화되었고, 유럽변호사는 2003년 3월부터 독일내에서 원자격취득국에서 인정되는 전문직 명칭을 이용하여 어떠한 별도의 시험 없이 외국법과 국제법 관련 자문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법학대학에서 최소 7학기를 이수하면서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각 주에서 실시하는 1차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대학 밖의 유료강좌를 들으며 1년 내지 2년 정도 준비를 한 후 1차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1차 시험에서의 낙방율은 주와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25% - 50%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민사법원, 형사법원 또는 검찰청, 변호사사무실, 행정판청 등에서 2년간의 시보수습과정(Referendariat)을 거쳐 2차 국가시험에 응시한다. 이 시험의 합격율은 대체로 1차 시험의 합격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2차 시험의 합격자 중 2% 미만이 법조직무를 담당하게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는 인원도 15%를 넘지 못한다. 현재 독일에서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률가는 대략 18만명 정도이고 13만 5천명의 법학도가 있으며 그 중 매년 1만명 이상이 법률시장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그것이 변호사 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질만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법조시장이 개방되자, 상당한 실력을 갖춘

외국 로펌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변호사를 고용하기 시작하여 외국 로펌에 고용되지 않은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변호사로 평가된다. 또한 대형 외국 로펌에서 스카우트한 변호사는 여러 각도에서 실력이 겸증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외국 로펌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독일은 결과적으로 법률시장의 개방이후 시장의 상당부분을 영미계 로펌들에 의해 잠식당하여 10대 로펌 중 순수한 독일로펌은 단 1개만 남게 되었으며 상당수의 변호사가 변호사직을 포기했다. 독일의 대학 출신이라면 영어를 구사하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로펌이 영미계에 뒤지는 이유는 언어문제가 아니라 대학과정에서의 교육과 그 이후의 실무경험의 미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중국은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외국계 로펌의 중국 내 활동을 엄격히 규제했으나 국영기업이 차츰 민영화되고 동업자 형태의 로펌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자국 내 로펌의 강력한 경쟁자로 간주되던 국제적 로펌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은 2002년의 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of 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Law Firms)와 동 법의 시행령을 통해 중국법률시장에 있어서의 외국계 로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외국 로펌의 자격으로는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했어야 하며, 변호사 윤리규정 및 개업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일이 없어야 하며, 중국 내에서의 실제 업무 수요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외국 로펌의 대표변호사의 자격으로는 중국변호사 직업윤리와 개업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격취득 국가에서의 변호사로서 변호사회 회원이어야 하며 중국 외 국가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을 것을 요구한다. 수석대표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로펌에서 일하거나 그 대표를 겸임할 수 없으며 매년 중국 내에서의 체재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그 밖에 수석대표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어야 한다.⁶⁾

대표사무소와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예컨대 그 소속

6) 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제7조

변호사의 자격취득 국가의 법률에 관한 자문,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대한 자문, 고객이나 중국 로펌으로부터의 위임을 통해 해당 대표사무소의 변호사가 업무수행을 허가 받은 지역이나 국가의 법률관련 업무수행, 계약에 의해 형성된 중국 법률사무소와 장기적 위탁관계에 따른 법률사무의 처리 등을 할 수 있다.⁷⁾ 대표사무소는 중국에서 중국법 업무수행이 허가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고객에게 법률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지 않은 지원인력만을 고용할 수 있다.⁸⁾

외국 로펌의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 해당 지역 인민정부의 사법행정부에 설립지원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인민정부는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국가위원회의 사법행정부에 자신의 검사결과와 함께 지원서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법행정부가 신청된 대표사무소의 설립을 허가하면 대표사무소에 영업허가가 주어지고 대표사무소의 대표자들에게는 영업증서가 발급된다. 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사무소와 그 대표자는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대표사무소의 자격이 심사에서 탈락하여 취소되면 향후 5년 동안은 중국 내에서의 대표사무소 설립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속변호사의 자격증도 아울러 취소되며 역시 향후 5년간 중국 내에서 변호사활동을 할 수 없다.⁹⁾

대표사무소 또는 대표자가 공안범죄, 규정위반 등을 범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한시적 업무정지, 위법소득 몰수, 경고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심사 허가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리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직급강등, 직위제, 면직 등 중한 징계를 부과한다.

3. 일본

일본의 경우 1987년 법률시장 개방 당시 일본변호사와의 동업 및 고용을 전면금지했으나(현 우리나라 1차 개방안과 같은 수준) 1994년 제한적 제휴형태인 '특정공동사업'의 공동경영을 허용했고 1998년 5월 특정공동사업의 목적과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외변법) 제10차 개정을 통해 2005년 4월1일부터 일본변호사와의 동업 및 고용을 전면 허용함과 동시에 변호사법인제도 도입에 따라 '특정공동사업'을 '외국법공동사업'을 대체했다.

7) 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제15조

8) 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제16조

9) 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제21조 이하

소속 변호사수 기준의 5대 로펌 중 4개가 법률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중대형 로펌간의 합병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소속변호사는 현재 130명에서 180명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신규 변호사를 영입하여 대형화를 서두르고 있다.

V. 법률시장개방에서 기대되는 효과

1. 법률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문제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의 로펌이 우리나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각 해당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로펌을 통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국내 변호사들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변호사의 자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법률서비스의 경쟁체제로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 반면 변호사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하락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변호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이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될 분야는 국제통상, 금융관련의 고급시장에 한정될 것이고 국내법 관련업무는 우리나라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과정을 통과한 변호사의 경쟁력에 필적할 수 없을 것으로 여전히 국내변호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외국 변호사의 고객층이 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 등이 지불해야 할 법률서비스 비용은 이들이 제시하는 수준에 따라 증가할 것이고 이로써 국내 법률시장의 전반적 가격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일반 소비자부문에 있어서는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로스쿨 졸업자가 많다고 해서 일반소비자의 법률서비스 비용이 낮은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수가 낮은 변호사를 택하기보다는 비싸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높은 편을 선호한다. 결국에는 강자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로스쿨을 도입하여 특별한 실전능력이나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를 다량 배출하게 된다면 이러한 영미계의 대형로펌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법률시장을 장악한 후 그들의 보수체계를 적용할 것이다.

법률서비스 비용의 문제 뿐 아니라 국내 사법제도의 혼란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내로펌은 영미계 대형로펌에 인수 합병되거나 흡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치열한 국제 경쟁력으로 단련된 영미계 로펌

은 고객의 이익과 사법제도가 충돌하는 부분에서 고객의 이익에 우선할 것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과 원칙에 따른 양심적 판단보다는 형식적 법률에 존재하는 허점을 공략하여 고객에 유리한 형태로 법률을 재창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¹⁰⁾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사법제도와 법률시장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도 있다.

2. 외국인 투자관련성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2002년 12월 국내언론기관들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52개사의 CEO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지나친 행정규제, 임금상승의 순으로 꼽았고¹¹⁾ 그 밖에 홍콩이나 싱가폴에 비해 낮은 영어구사능력, 자녀교육여건, 의료시설 등이 지적되었으나 법률시장 개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경우 외국법이 아니라 국내법이 적용되고 현재에도 이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외국로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이므로 법률시장의 국제적 장벽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¹²⁾ 오히려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법률서비스 교역에서의 무역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VI.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1.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첨단 분야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며 국제적으로는 국가별 전문변호사가

10) 김형준, 법률시장 개방현황과 향후과제, 법조 2005.3(Vol. 582) 39면 각주 28)

11) 2002. 11. 10 donga.com;

http://www.donga.com/fbin/output?f=b_s&n=200211100217&main=1

12) 김형준, 앞의 글 36면 이하

필요하다. 이러한 오늘날의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화, 전문화된 법률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법률시장에 대한 독과점체제로 비춰질 수 있다. 여기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변호사들 사이에 경쟁을 유발하여 나름대로의 특성화 분야를 개발하도록 해야 하며, 법조직역의 다양화를 꾀하여야 한다.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뿐 아니라 분쟁의 예방적 법률서비스의 제공에도 눈을 돌려야 하고 국제적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상대국의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법률에 정통한 우리나라의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WTO 체제에서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 국제거래, 국제경제, 경쟁분쟁해결의 법률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조인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조인의 수는 늘어나야 한다. 사회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보다는 법조계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현행의 합격자 수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한다.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의 임용시험으로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걸러내는 역할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이 견해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확대, 법률수요와 법률시장의 확대 필요에 따라 변호사수요 예측조사 등을 감안하여 법조인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법조인 수의 증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2. 미국식 로스쿨의 도입

미국의 로펌들은 3년 과정의 로스쿨을 마친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세계의 법률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조인력을 양성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들은 로스쿨만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로스쿨을 마친 후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시험의 통과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변호사로서의 실질적 직업교육과 실무연수는 3년 과정의 로스쿨보다는 로펌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펌은 업무분야를 국제통상, 환경, 형사, 금융, 문화예술, 특히 등으로 세분하고 그 중 예컨대 금융

부분을 기업 M&A(인수·합병), 주식과 사채, 론 등으로 다시 나누어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모든 영역에 대한 순환업무를 통해 각 분야에서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에서 시작하여 차츰 비중 있는 사건을 맡게 되고 어느 한 영역에서 적성이 맞으면 그 분야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전문가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로펌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용한다. 이것은 각 개인이 실무나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판례정보 등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한 후 이를 체계화하여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로펌은 이 시스템에 등재된 정보의 질과 양을 심사하여 그 주체자의 승진과 보수에 반영한다. 이러한 지식의 누적은 곧 로펌의 실력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유능한 변호사는 로스쿨과 로펌의 협조체계에서 양성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제통상 관련 법률서비스 시장은 법률시장의 개방과 함께 외국의 로펌에 상당부분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국내법에 입각한 송무관련 법률서비스만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과한 인적 자원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로펌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미국식 로스쿨만 도입한다면 자칫 변호사의 경쟁력만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송무시장마저 외국인 변호사에게 위협 당할지 모른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법대생들이 미국에서 LL.M. 과정을 마치고 비교적 수월하게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의 언어, 법률, 문화에 익숙한 점을 이용 한국법에 대한 자문활동을 함으로써 국내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¹³⁾

3. 법학교육기관의 획기적 변화

1) 교과과정의 확대와 특성화

최근 사법개혁의 흐름 속에서 장래 새로운 법률수요에 대한 공급자로서의 법과대학의 전문성의 강화와 특성화에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재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현상과 사건이 발생하며 법률가에게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를 찾아내고 구상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법과대학이 이러

13) 김준동,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의 전망과 과제, 제4회 법률가대회 자료집, 28면.

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효용가치 없는 법적 지식의 단순재생산만 반복하는 기관으로 평가될 것이다.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제도는 기업경영이나 국제통상관련 법률전문가 혹은 사회의 새로운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보다는 국내법에 입각한 송무 관련 전문가를 배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 예컨대, 의료법, 유전공학관련법, 국제통상법, 산업재산권법, 장애인법, 자원보호법, 국제인권법, 과학기술법, 컴퓨터공학법, 우주항공법 등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법학과목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법조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법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에도 충실히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사법시험은 법조인의 책임의식이나 윤리적 소양의 검증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므로 교과과목의 설정에 있어서 전문법조인으로서의 정의, 공평,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능력의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 혹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영역별로 특화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법학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현재 및 장래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졸업한 후 법률전문가로서 법조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교과과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기초법 분야 (로마법, 서양법제사, 한국법제사,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상사, 동양법제사, 법학방법론, 법경제학, 법정보학, 법인류학)
- (2) 민사법 분야
- (3) 형사법 분야
- (4) 공법 분야
- (5) 기업법 분야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은행법, 상사중재)
- (6) 세법 분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부가가치세법, 세무소송)
- (7) 경제법 분야 (독점규제법, 산업규제법, 공기업법, 기업결합법, 소비자보호법,

(중소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 (8) 통상법 분야 (국제경제법, 외환관리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국제거래법, WTO 법, 섭외사법, 섭외소송)
- (9) 사회법 분야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 단체협약법, 부당노동행위 법, 공동결정제도, 재해보상법, 노사협의회법, 노사관계론)
- (10) 환경법 분야 (환경기본법, 환경책임법, 환경소송론)
- (11) 산업재산권 분야 (무체재산권법, 특허법, 특허소송,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 (12) 국제법 분야 (국제법, 국제조직법, 조약법,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재판, 국제연합법, 전쟁법, 항공우주법, 국제인권법)
- (13) 비교법 분야 (영미법, 독일법, 프랑스법, EU법, 일본법, 중국법, 북한법, 사회주의법)
- (14) 새로운 법 분야 (법과 광고, 법과 문학, 법과 예술, 스포츠와 법, 협상론, 컴퓨터와 법, 과학기술과 법, 노인과 법, 여성과 법, 미성년자보호와 법, 법정책학, 장애인과 법)

이러한 안은 종래의 대다수의 법과대학이 유지해오던 교과과정에 비교하면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법학을 위한 교과과정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에서의 교과과목은 기존 교과과목의 질적 심화 및 양적 확대를 꾀하고 새로운 교과과목의 개발 및 체계화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에서는 종래의 국내의 송무중심의 교과과목에서 탈피하여 새로이 등장하는 다양한 법적 수요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법률가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한 대학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몇 가지 전문분야를 선정하여 특화해 나아갈 것이 필요하다.

2) 특정 전문분야의 특화의 예시

앞으로 법과대학원에서는 기존의 현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과목에 대한 질적 심화는 물론 예컨대 실무교육 (Clinical Training), 의료법 (Health Law), 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 환경법 (Environmental Law), 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국제법 (International Law), 세법 (Tax

Law), 컴퓨터관련법 및 소송법(Trial Advocacy) 등의 새로운 교과목의 설정이 필요하다.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법과대학 인가기준에 근거하여 미국의 주요 법과대학에서는 최근 다음과 같은 전문분야를 특성화하고 있다.¹⁴⁾

(1) 실무교육 (Clinical Training)

Georgetown University는 의뢰인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와 의뢰인 소송없이 법적 실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두 가지 종류의 실무과정을 제공한다. 실무과정의 교과목으로 * 응용법학실무 (Center for Applied Legal Studies) * 형사실무 (Criminal Justice Clinic) * 상소(Appellate Litigation Clinic) * 워싱턴 D.C. 생활법 (D.C. Street Law Program) *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 가족법 (Family Opportunities) * 연방입법 (Federal Legislation) * 행정법 (Harrison Institute for Public Law) * 시민대표 (Institute for Public Representation) * 국제여성인권법 (Institute for Women's Human Rights Clinic) * 소년 형사법 (Juvenile Justice Clinic) 등의 강의를 개설한다.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의 경우 모의법정 경연대회(Marden Moot Court Competition) 개최하고 실무소송 프로그램(Clinical and Advocacy Program) 운영한다.

(2) 환경법 (Environmental Law)

Northwestern School of Law of Lewis and Clark College는 법과대학의 교과목을 환경 및 천연자원법(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Law)으로 특화하고 학과수업, 학과외 활동(extra curricular activities), 실무참여(clinical opportunities)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교과목으로는 * 에너지법 (Energy Law) * 환경법 (Environmental Law) * 국제환경법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토지이용계획 (Land Use Planning) *

14)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법과대학 인가기준 301. (b) 로스쿨은 다른 부분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대신 법이나 법조직역의 특성측면을 강조하도록 고안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은 로스쿨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명백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광산 및 광물임차법 (Mining and Mineral Leasing Law) * 천연자연법 및 정책 (Natural Resources and Policy) * 해양 및 해안법 (Ocean and Coastal Law) * 원유 및 가스법 (Oil and Gas Law) * 국유부동산 및 자원법 (Public Lauds and Resources Law) * 수자원법 (Water Law) * 야생동식물보호법 (Wildlife Law) * 환경규제 (Environmental Regulation) * 연방인디언법 (Federal Indian Law) * 유해폐기물법 (Hazardous Waste Law) 등의 강의를 개설하며, * 국제해양법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 청정공기법 (Clean Air Act Seminar) * 비교환경법 (Comparative Environmental Law) * 환경손해보험법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Seminar) * 산림법 및 정책 (Forest Law and Policy) * 무역과 환경 (Trade and the Environment) * 법, 과학 및 환경 (Law, Science and Environment) 등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수업 이외에 관련 법조인의 지도하에 연방과 주의 행정기구, 기업, 변호사 사무실, 입법부에서의 환경실무 (Environmental Clinical Internship) 실습 등 실습프로그램을 운용한다.

(3)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Franklin Pierce Law Center)은 LL.M. 과정에 지적재산권 전공과정을 설치하고 J.D.과정에서도 지적재산권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 독점금지법 (Antitrust Law) * 컴퓨터법 (Computer Law) * 저작권법 (Copyright Law) * 프랜차이즈법 (Franchising Law and Practice) *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ies) * 정보불법행위 (Information Tort) * EU에서의 지적재산권 및 경쟁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in the European Union) * 국제 비교저작권법 (International & Comparative Copyright Law) * 국제 비교특허법 (International & Comparative Patent Law) * 국제 비교상표법 (International & Comparative Trademark Law)

콜롬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도 법과 예술 센터(The Center for Law & the Art)를 설치하여 법과 예술 학회지(The Columbia-VLA Journal of Law & the Arts) 발행하고, 법·과학 및 기술 프로그램(Julius Silver Program in Law, Science & Technology)을 운용하고 있다.

(4)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Pepperdine University는 분쟁해결 부분에 중점을 두어 * 법조실무과정 (Lawyering Process) * 조정 (Mediation) * 중재실무연습 (Arbitration Practice) * 소송실무 및 분쟁해결 (Trial Practice & Settlement) * 소송변론 (Trial Advocacy) * 환경 및 공익분쟁해결 (Environmental and Public Interest Dispute Resolution) * 상사 및 국제분쟁해결 (Commercial and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 가사분쟁해결 (Domestic Relations Dispute Resolution) * 교육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 in Education) * 면담 · 상담 및 계획 (Counselling·Planning) * 교섭 및 분쟁해결 변론 (Negotiation and Settlement Advocacy) 등의 강의를 개설하며, 실무교육(Clinical or Externship Program)으로 관련법령 및 변호사의 감독 하에 행정심판 및 민사형사 소송의 일부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회사, 검찰, 법원, 공익법률단체(Public Interest Legal Agencies) 등에 파견하여 실무를 익하게 한다.

(5) 보건법 (Health)

보건법 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University of Houston의 경우 보건법(Health Law)을 J.D.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정하며 J.D. and M.P.H.(Master of Public Health)와 J.D. and Ph.D. (Doctor of Medical Humanities)의 공동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교과과정으로는 * 보건법 (Health Law) * 유전공학 관련법 (Biotechnology and the Law) * 교정보건법 (Correctional Health Law) * 장애자 관련법 (Disabilities and the Law) * 식품 및 의약품법 (Food and Drug Law) * 성과 법 (Genetics and the Law) * 보건법과 고령자 (Health Care Law and Aging) * 보건법 실무 (Health Law Clinic) * 의료소송법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 직업건강법 (Occupational Health Law) * 공공보건법 (Public Health Law) * 보건직업관리 (Regulation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 보건법과 헌법 (Health Law and the Constitution) * 법과 심리학 (Law and Psychiatry) 등을 강의한다.

St. Louis University 역시 J.D. and M.H.A. (Master of Health Administration) 와 J.D. and M.P.H. (Master of Public Health)의 공동학위과정을 설치하고 * 보건법 (Health Law) * 유전공학 (Bioethics) * 법과 심리학 (Law and Psychiatry) * 공공보건과 법 (Public Health and the Law) * 어린이 학대 및 무관심 (Child

Abuse and Neglect) * 법과 노인 (Law and Aging) * 직업건강법 (Occupational Health) * 보건법 실무 및 실습 등을 강의하고 있다.

(6) 국제법 (International Law)

하바드 대학(Harvard Univ.)은 유럽법연구센터(The European Law Research Center)를 두고 있으며 * 동아시아 법률 프로그램(The East Asian Legal Studies Program) * 국제비교법 연구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egal Studies Program) * 국제세법 프로그램(International Tax Program)을 설치하고 있다.

* 비교 중국법 (Law and Legal Institutions in Contemporary China) * 비교한국 근대화법(Legal Problems of Newly Industrialized Nations Korea) * 비교 일본법 (Selected Problems of Japanese Law) * 유럽통상법 (European Union : Trading in and with Europe) * EU, NAFTA 및 WTO * 비교 소득세법 (Comparative Income Taxation) * 비교 아랍법 (Comparative Law : The Arab Middle East) * 비교 일본형사법 (Comparative Law : Crime Law and Justice in Japan) * 이슬람 계약법 (Islamic Contract Law) * 이슬람법구조 (Islamic Legal System) *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투자 (Foreign Investment in Natural Resources) 등의 강의를 개설 한다.

뉴욕 대학(New York University)은 국제학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설치하고 국제교환 프로그램(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 유럽교역법 (The Law of EU ; Trading in and with Europe) * 일본의 국제법 (International Law in Japan) *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제3세계 인권법 (Human Rights in a Third World Perspectives) * 국제환경법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이민 및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 * EU법과 사회보장 (European Union Law and Social Welfare) * 남미 상거래법의 발전 (Development in Commercial Law in Latin America) * 비교 상거래법 (Comparative Commercial Law) * 비교 분쟁해결 (Comparative Dispute Resolution) * 유럽 형사법 (European Criminal Law) * EU법 (European Union Law) * 영미법사 (English Legal History) * 중국법사 (Chinese Legal

Tradition) * 중국법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일본법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aw) * 중국의 법과 사회 (Law and Society in China) * 일본의 법과 사회 (Law and Society in Japan) * 세계경제속의 한국법 (Korean Law in a Global Economy) * 미국과 아시아간의 국제거래분쟁해결 (Business Dispute Resolution Between U.S. and Asia) * 남아시아법 (South Asian Law) * 이슬람법 (Islamic Law) * 탈무드 민사법 (Talmudic Civil Law)

(7) 소송변론 (Trial Advocacy)

Temple University는 소송변론의 LL.M(LL.M in Trial Advocacy)과정을 두고 있으며(소송전략)Litigation Strategy * 전문가 증언(Expert Witnesses) * 변론기술 (Art of Advocacy) * 소송증언 (Advanced Trial Evidence) * 배심원선정(Jury Selection) * 배심재판 (The Jury Trial) 등의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VII 결론

경제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제법률시장의 활발한 교류와 개방의 필연성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화·전문화된 변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일반 소비자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필요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질적·양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아직도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공급자의 이익보호 관점에서 사법시험의 자격제한 등 집단이기주의에 얹매여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특히 법조시장에서는 사법시험의 합격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국제화 시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획기적인 양적·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식 로스쿨의 도입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에는 실질적 직업훈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대형 로펌이 존재하나 이것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 로스쿨의 도입은 공허한 것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로스쿨에서 사례방식이나 문답방식의 수업진행방식도 우리의 법체계에 맞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굳이 로스쿨을 도입하려 한다면 적어도 사회적 시스템

의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식에 맞는 로스쿨의 형태에 대한 철저한 구상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막연한 미국화의 허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성화를 통한 법과대학의 발전적 변화와 응시자격과 핫수의 제한과 합격정원의 증대를 포함한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이 현실성 있는 접근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 사법제도 개혁, 로스쿨, 법률시장개방, 도하개발아젠다, 교과과정 특성화

[Zusammenfassung]

Globalisierung und die Einführung der amerikanischen Law School in Korea

SEONG, Nak-Hyon

Mit der immer weiter fortschreitenden Globalisierung wuchs auch die Nachfrage nach internationaler Ausrichtung in der juristischen Praxis. Es wurde die Internationalisierung und Zusammenarbeit mit ausländischen Rechtsanwälten unvermeidlich, so daß ein System dringend erforderlich ist, zahlreiche in verschiedenen Bereichen spezialisierte und internationalisierte Rechtsanwälte systematisch auszubilden. Sowohl privatpersonen, als auch Firmen finden heutzutage nur schwer Unterstützung bei allen rechtlichen Fragen des Firmen- oder Privatalltags, wie auch spezielleren, wirtschaftlichen Angelegenheiten.

Um diese Probleme zu lösen, wurde seit langem eine Reform der juristischen Ausbildung gesucht. Als eine Art davon tritt die Einführung der amerikanischen Law School auf. Aber das ist bei unserer Lage keine einzige empfehlenswerte Lösungsmöglichkeit. In den USA gibt es nämlich zahlreiche hoch qualifizierte Rechtsanwaltskanzlei, die die Absolvente der Law School zu konkurrenzfähige und spezialisierte Anwälte ausbilden. Gerade diese Voraussetzung für den Erfolg von Einführung der Law School ist bei uns gefehlt. Bei unserer Situation könnten vielmehr fortschreitenden Wandlung der juristischen Fakultäten durch die Spezialisierung und Verbesserung des jetzigen Staatsexamenssystems effektivere und realisierbare Lösungsmethode sein.